

의안번호	제 34 호
의결 년월일	2004. 9 . .

의 결 사 항

사천시문화예술공간맞미술장식설치조례안

제 출 자	사 천 시 장
제출년월일	2004. 9. 7.

사천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조례(안)

의안 번호	34
----------	----

제출일자 : 2004. 9. 7
제 출 자 : 사 천 시 장

1. 의결주문

사천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조례를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정이유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에 대하여 문화예술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문화 예술 진흥에 기여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공연, 전시 및 문화보급·전수 등의 문화예술공간의 설치 권장 대상 건축물 범위를 정함

- 공동주택, 업무시설, 숙박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위락시설, 병원, 공연장 및 집회장

나. 미술장식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 구성 : 위원장(부시장) 포함 5인 이상 10인 이내
- 임기 : 2년(연임가능)
- 기능 : 미술장식 가격, 미술장식의 예술성, 미술장식과 건축물의 조화, 미술장식과 환경의 조화, 미술장식의 도시미관에 대한 기여도 등 기타 미술장식 설치에 필요한 사항

다. 미술장식설치계획심의신청서 제출시기를 정함

- 건축물 골조공사 완료 이전까지

라. 미술장식 설치완료 시기를 정함

- 건축물의사용승인 신청 이전까지

마. 미술장식에 사용하는 건축비용의 비율

- 영 제24조제1항제1호의 공동주택 : 3/1000 이상
- 영 제24조제1항 제2호 내지 제9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 5/1000 이상

4. 주요 토의과제 : 없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따로 붙임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담당관실, 도시건축과

라. 기 타

1) 입법예고(2004. 8. 3 ~ 2004. 8. 25)결과 제출된 의견 없음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조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에 대하여 문화예술진흥법(이하“법”이라 한다) 및 같은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문화예술공간의 설치권장 대상건축물) 시장이 법 제9조제2항 및 영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연, 전시 및 문화보급·전수 등의 문화예술공간을 설치하도록 권장하여야 할 대상 건축물은 건축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공동주택
2. 업무시설
3. 숙박시설
4. 판매시설 및 영업시설
5. 위락시설
6. 의료시설중 병원
7. 근린생활시설
8.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과 집회장

제3조 (미술장식심의위원회) 영 제24조의3 규정에 의하여 미술장식의 가격 및 예술성 등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감정·평가를 위하여 사천시미술장식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촉직위원은 미술·건축·환경·공간디자인·도시계획분야 등의 전문가 및 시민대표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로 하고, 당연직위원은 문화관광 및 도시건축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한다.

④시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할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
3. 거주이전 등으로 본 위원회에 참가할 수 없게 되는 때

제8조 (간사 및 서기) ①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간사는 문화예술업무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업무담당자가 된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9조 (미술장식 설치에 대한 심의) ①영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적용을 받는 건축물의 건축주는 당해 건축물의 골조공사 완료 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미술장식설치계획심의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건축물에 설치되는 미술장식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여야 한다.

1. 미술장식 가격
2. 미술장식의 예술성
3. 미술장식과 건축물의 조화
4. 미술장식의 안전성 및 보존성
5. 미술장식의 도시미관에 대한 기여도 등 기타 미술장식 설치에 필요한 사항

③위원회에서는 제2항에 의거 심의한 미술장식에 대하여 설치과정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도의 감리위원을 지정하여 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④감리위원은 당해 미술장식이 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과 다르게 설치될 경우 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 공사를 일시 중지시킬 수 있다.

제10조 (미술장식의 설치 확인) ①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건축물의 건축주는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이전까지 미술장식의 설치를 완료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관리카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 이전까지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출된 관리카드의 내용이 제9조제1항의 신청내용대로 이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1조 (미술장식의 가격 결정) 미술장식의 가격은 건축주와 작가간의 미술장식

설치계획서상의 계약금액으로 하되, 사회통념상의 가격보다 부당하게 고가로 계약된 금액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금액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제12조 (미술장식에 사용하는 건축비용의 비율) 영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비용의 비율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1. 영 제24조제1항제1호의 공동주택(연면적 1만㎡이상) :3/1000 이상
2. 영 제24조제1항 제2호 내지 제9호의 건축물(연면적 1만㎡이상) : 5/1000 이상

제13조 (미술장식의 유지관리) ①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설치가 완료된 미술장식에 대하여 설치된 상태로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미술장식은 영구보존을 원칙으로 하며, 여건이나 상황의 변동으로 인하여 철거 또는 위치 변경·교환·대체 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시장은 미술장식의 관리소홀로 인하여 훼손 또는 무단 위치변경 등을 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시정 또는 보수를 명할 수 있다.

제14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사천시 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 (위임규정)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미술장식 설치계획 심의신청서 <제9조 제1항관련>

건축개요	위 치					
	건 축 주	성명 :		주소 :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 면 적	
	층 수		최고높이		구 조	
	용 도		외장재료		건축종별	
	허가일자		사용검사 예정일		총공사비	
건 축 설 계 자	주 소					
	사무소명		성 명		전 화	
미술장식	작 가 명	인	작 품 명		작품가액	
	전화번호		재료(색상)		규 격	
	작 가 명	인	작 품 명		작품가액	
	전화번호		재료(색상)		규 격	
	작 가 명	인	작 품 명		작품가액	
	전화번호		재료(색상)		규 격	
	총설치수	조각 점, 회화 점, 기타 점, 계 점				
	총 가 액		설치예정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신청인 인						
사 천 시 장 귀하						
첨부서류 1. 미술장식 설치계약서 사본 2부 2. 작가경력서 사본 1부 3. 미술장식 설치계획 심의도면 15부(인원수에 따라 부수 조정)						

※ 건축물중 일부만 미술장식 설치대상인 경우 총공사비는 당해 부분만의 공사비를 기재

[별지 제2호서식]

미 술 장 식 관 리 카 드 <제10조제1항관련>

연번	년 도 - 허 가 번 호 - 미술장식번호 -				
건축 허가	번호 :	심 의 일 자	년 월 일	설 치 일 자	년 월 일
건축주	주 소				
	성 명				
대 지 위 치					
대 지 면 적				용 도	
건 축 면 적				연면적	
층 수				건물명	
미 술 장 식		작품명			재 료
		규 격			색 상
		작가명			가 격
작품설치위치					
작 품 설 명					
미술장식 설치현장 사진					

관계법령 발췌

문화예술진흥법

第9條 (文化藝術空間의 設置勸■) ①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文化藝術活動을 振興시키고 國民들의 보다 높은 文化享受機會를 확대하기 위하여 文化施設을 設置하고 이용되도록 施策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文化施設을 設置하도록 勸■ 하여야 한다.

③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文化施設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文化施設의 관리를 非營利 法人· 團體 또는 개인에게 委託할 수 있다.

第11條 (建築物에 대한 美術裝飾) ①大統領令이 정하는 종류 또는 규모 이상의 建築物을 建築하고자 하는 者는 建築費用의 일정 比率에 해당하는 금액을 繪畫· 彫刻· 工藝 등 美術裝飾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美術裝飾에 사용하는 금액은 建築費用의 100分の 1 이하의 범위안에서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美術裝飾의 設置節次·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건축법

第2條 (定義) ① (생략)

②第1項第2號의2의 規定에 의한 建築物의 用途는 다음 各號와 같이 구분하되, 각 用途에 속하는 建築物의 종류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1. 單獨住宅
2. 共同住宅
3. 第1種 近隣生活施設
4. 第2種 近隣生活施設
5. 文化 및 集會施設
6. 販賣 및 營業施設
7. 醫療施設
8. 教育研究 및 福祉施設
9. 運動施設
10. 業務施設
11. 宿泊施設
12. 慰樂施設
13. 工場
14. 倉庫施設
15. 危險物貯藏 및 處理施設
16. 自動車關聯施設
17. 動物 및 植物關聯施設
18. 糞尿·쓰레기處理施設

19. 公共用施設
20. 墓地關聯施設
21. 觀光休憩施設
22.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施設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제23조 (문화예술공간의 설치권장 대상건축물) 법 제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건축물"이라 함은 연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그 건축물이 소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제24조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 ①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비용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술장식의 설치에 사용하여야 할 건축물은 건축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건축법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연면적을 말하며, 주차장·기계실·전기실·변전실·발전실 및 공조실의 면적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1만제곱미터(증축의 경우에는 증축되는 연면적이 1만제곱미터)이상인 것으로 한다. 다만,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각 동의 연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하며, 각 동의 위치한 단지내의 특정한 장소에 미술장식을 설치하여야 한다.

1. 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
2.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 바목·사목 및 아목의 시설을 제외한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3. 문화 및 집회시설중 공연장·집회장 및 관람장
4. 판매 및 영업시설
5. 의료시설중 병원
6. 업무시설
7. 숙박시설
8. 위락시설
9. 공공용시설중 방송국·전신전화국 및 촬영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과 통신용 시설

②법 제11조제1항에서 "건축"이라 함은 건축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축 및 증축을 말한다.

③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서 "건축비용"이라 함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연면적에 대하여 산정한 금액(설계변경을 한 경우에는 최종 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특별시 및 광역시 지역을 제외한 지역의 경우에는 표준건축비의 100분의 95를 기준으로 연면적에 대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④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서 "미술장식"이라 함은 제2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 또는 평가를 거친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회화·조각·공예·사진·서예 등 조형예술물
2. 벽화·분수대·상징탑 등 환경조형물

⑤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술장식에 사용하여야 하는 금액은 별표 1의2와 같다.

제24조의2 (미술장식의 설치절차·방법) ①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술장식의 설치의무가 있는 건축주가 건축물에 미술장식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 당해 건축물이 특별시·광역시 지역에 소재하는 때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에게, 그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때에는 시장·군수에게 당해 미술장식의 가격 및 예술성 등에 대한 감정·평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미술장식의 가격 및 예술성 등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감정·평가하여 그 결과를 건축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기타 미술장식의 설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4조의3 (미술장식심의위원회) ①지방자치단체는 제2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미술장식의 가격 및 예술성 등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감정·평가를 위하여 미술·건축·환경·공간디자인·도시계획분야 등의 전문가 및 시민대표 등으로 구성되는 미술장식심의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미술장식심의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미술장식의 가격
2. 미술장식의 예술성
3. 미술장식과 건축물의 조화
4. 미술장식과 환경의 조화

③미술장식심의위원회는 제2항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미술장식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